

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2 월 30 일

여 수 시 장 서기영



여수시 조례 제2275호

붙임 여수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 1부

여수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읍·면·동민의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자긍심과 애郷심을 북돋우며, 화합과 단결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민의 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읍·면·동민”이란 여수시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읍·면·동민의 날”이란 여수시 읍·면·동 별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주민 화합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제3조(읍·면·동민의 날 지정) ① 읍·면·동민의 날은 각 읍·면·동에서 종전부터 운영하여 온 경우에는 그 날을 읍·면·동민의 날로 한다.

- ② 읍·면·동민의 날을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읍·면·동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정한다.

제4조(행사) 읍·면·동민의 날에 개최하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읍·면·동민의 날 기념식 또는 체육행사

2. 그 밖에 읍·면·동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5조(추진위원회 구성) ① 읍·면·동장은 읍·면·동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읍·면·동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된 읍·면·동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읍·면·동 사회단체 또는 체육 관련 협의회 등으로 하여금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읍·면·동장은 제4조의 행사를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행사비 지원) 여수시장은 읍·면·동민의 날의 행사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6조에 따른 행사비 지원 절차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읍·면·동민이 개최한 행사와 시장이 행사에 대하여 배정 또는 지원한 경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사 및 경비로 본다.